



법률 제8014호 2006. 9. 27일 개정 공포

하수도법 주요 개정내용

구: 『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』

가. 하수와 오수·분뇨의 통합(안 제2조 및 제5조)

- (1) 하수와 오수·분뇨의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
- (2) 『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』 중 오수·분뇨를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정의하고, 하수도를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구분하며, 오수·분뇨처리계획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.
- (3) 하수와 오수·분뇨의 관리체계의 통합으로 정책 및 투자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.

나. 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확대 기반 마련(안 제20조 및 제26조)

- (1) 물 자원의 재이용 또는 재활용을 확대하려는 것임
- (2)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신규로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를 공업용수·화장실용수·청소용수·조경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,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, 『수도법』에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의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물의 재이용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.
- (3) 물 자원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고, 용수부족에 대응하며, 하수처리시설의 처리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.

다. 개인하수도시설의 전문업체 시공제도 도입(안 제27조 제2항 및 제38조)

- (1)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건축주가 직접 개인하수도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실시공을 예방하려는 것임.
- (2) 종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배수설비 전문 시공업체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자가 이를 설치하도록 함.
- (3) 개인하수도시설 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 하수처리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.

라. 하수처리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(안 제34조)

- (1) 공공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

에서 하수처리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.

- (2) 오수를 분류식 오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거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함.
- (3) 하수처리시설을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낭비요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.

마. 분뇨 관련 업종의 통·폐합(안 제45조 및 부칙 제5조제항)

- (1) 분뇨의 수집·운반과 관련된 업종은 사업의 범위가 동일함에도 영업범위의 구별로 인한 각종 비합리성을 개선하려 것임.
- (2) 영업범위를 구별할 필요성이 없는 정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·운반업을 분뇨수집·운반업으로 통합하고, 그 동안 등록된 업체가 없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분뇨처리업을 폐지함.
- (3) 분뇨 관련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분뇨수거업체를 달리 선택하는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고, 관련 업종의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분뇨업체 전체의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.

바.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의 등록제 전환(안 제53조)

- (1)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업체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의 업종에 대하여 불필요한 허가제를 폐지하려는 것임.
- (2)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구역 지정 등의 허가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으므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.
- (3)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의 증가로 수요자가 관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업체간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.

※ 보다 자세한 법률의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, 법령→제·개정 공포법령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